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2 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이학영·박홍근·김교흥

박정현 • 이정문 • 이수진

한정애 · 김영배 · 한민수

전재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 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 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#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6항 전단 중 "75세"를 "65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⑤ (생	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<u>75세</u>	⑥ <u>65세</u>
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	
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	
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	
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	
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	
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	
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	
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	,
다.	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